(붙임 1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3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중 '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'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8호, 2019.2.15. 개정, 2019.3.1. 시행) 및 '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'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51호, 2016.8.18. 개정, 2016.9.1. 시행) 에 의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5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) 및 심장재동기화치료(CRT)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

- 제1조(목적) 이 절차 및 방법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따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, Implantable Cardioverter-Defibrillator) 및 심장재동기화치료(CRT,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)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전승인 신청) ① 요양기관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, Implantable Cardioverter-Defibrillator)(이하 "ICD"라 한다) 및 심장재동기화치료(CRT,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)(이하 "CRT"라 한다)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응급을 요하는 시술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의 요양급여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조(사전승인 심사)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진료심사 평가위원회 운영규정」에 의한 심사위원과 대한부정맥학회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 자문위원 등 4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ICD 및 CR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- 제4조(사전승인 심사 운영) 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. 다만, 심사위원이 사전승인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사전승인 심사는 당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.

- ③ 원장은 사전승인 심사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기간 내에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월로 사전승인 심사를 이월할 수 있다.
- ④ 원장은 사전승인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사전승인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.
- 제5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) ① 요양급여대상으로 사전승인 받은 경우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시술을 할 수 있다.
 -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"MX999(기타내역)" 및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"JX999(기타내역)"란에 사전승인 여부 및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6조(관계자 의견청취) 원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사전승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요양기관 관계자(시술예정자 등)의 유선의견을 듣거나,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요양급여대상 사전승인 취소) ① 원장은 사전승인 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공고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) 및 심장재동기화치료(CRT) 사전승인 신청서

| 1) 성명 | | 2) 나이(성별) | | 3) 주민등록 번 호 | | |
|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4) 진단명 | | | | 5) 보험구분 | 건강보험, | 의료급여 |
| 6) 치료계획 | | | | | | |
| 7) 급여기준 신청 항목 (<u>단, ICD인 경우 삽입</u> <u>경로 기재)</u> | ※ 고시 ICD 및 CRT 급여기준 참조 (ex. ICD 급여기준 중 "라.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"에 해당) | | | | | |
| 8) 사전승인 신청 사유 | | | | | | |
| 9) 약제투여 내역 | | | | | | |
| 10) 첨부자료 | 1. 의사소견서 2. 초진 및 재진 진료기록지(입원기록, 경과기록, 응급구조기록 등) 3. 약물 투여력 4. 심전도 (심전도, 운동부하심전도, 홀터 심전도, 그 외에 사건당시가 기록된 모든 형태의 심전도기록) 5. 심초음파(이전기록을 포함한 모든 심초음파 기록) 6. 심장기능을 알 수 있는 영상기록 ① CAG CD 및 판독지 ② coronary CT, chest CT, cardiac MRI, Thallium scan, MIBI scan 등 기록 7. 전해질 등을 포함한 혈액검사 기록 8. 그 외에 비가역적 심장 질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 ※ 상기 자료 모두 첨부, 첨부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| | | | | |
| 요양기관명 : 주치의성명 : 연 락 처 1 : | | 또는 날인) | 이메일: 가능한 주치의 | | 결과통보 회신 이 요망) | 메일 기재) |
| 연 락 처 2 : | (추가자료 요청 등 가능한 심사자 번호 기재 요망) | | | | | |

- 주) 1. 응급을 요하는 시술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
 - 2. 회의 시(매월 네 번째 수요일, 16:00~) 유선으로 의견청취가 가능한 번호를 연락처1에 기재